

대전지방법원 2023. 3. 9 선고 2022가단11804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 고 A종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

담당변호사 이종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

담당변호사 김연수

변 론 종 결 2023. 2. 2.

판 결 선 고 2023. 3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답 210㎡, D 답 249㎡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9. 6. 4. 접수 제73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피고는 원고에게 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E이 부동산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피고가 주장한다.

그러나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부동산등기부상 전 소유자이고 E이 그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본안 판단

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.

살피건대, 청구취지의 토지들이 원고 소유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바, 이전등기가 과연 원인무효인지가 쟁점인 것이므로 거기에 원고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, 원고의 증거가 없다.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금전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청구 역시 원고의 증거가 없음은 위와 마찬가지인데,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덧붙인다. 첫째, ‘피고’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F, 원고의 전 대표 G 등과 결탁하여 행위하였다는 데에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. 둘째, 설사 피고의 아버지 F이 매수대금 600만 원을 종중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대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‘피고’가 600만 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. 셋째, 원고는 재산상 손해의 액수(횡령 피해액)가 얼마인지 주장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서 명시적 일부청구로 60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한다. 원고가 매매대금조로 600만 원을 만약 지급받았던 것이라면, 그 손해 발생이 없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, 과연

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석명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분명하다.

3. 결론

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 오현석

청 구 원 인

1. 머릿글

원고는 H 19세손 병조판서 T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원들로 이루어진 종중입니다. 피고는 종원입니다.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재산입니다. 그런데 원고의 종전 대표자 G이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.

2.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

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의 소유입니다. 그런데, 전 대표자인 G이 멋대로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. G의 주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한 증여는 무효입니다. 임시총회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.

G이 연 임시총회가 무효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 G은 2019. 5. 24. 19:00경 임시총회를 열었는데, 8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(증여)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. 참석자는 G 자신, G의 자(J), G의 6촌(K), G의 10촌 F 및 그 자(L, M, B, N)라고 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G과 K, F 3사람이 그런 외관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또한, G은 위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안전과 회의장소 시간을 미리 정하여 종원들에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므로,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.

3. 600만원 금전 청구

위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횡령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대한 배상을 구합니다. 피고는 무효인 등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,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